

과학영재 선발 제도 안내

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2026학년도 GIST 학사과정 조기입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'과학영재 선발 제도'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신청자격 및 자격인정 기준

- 아래 (가)~(다)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, ① 또는 ② 항목에서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
 - 가.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
 - 나. 「영재교육 진흥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
 - 다. 「영재교육 진흥법」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

- ① 국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국어·영어·수학·과학 교과와 전 과목 환산평균이 94점(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이상인 자
- ②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
- ※ 초·중등교육법 제27조에 의거, 고등학교 조기졸업예정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자는 본 심사와 상관없이 2026학년도 GIST 입학전형에 지원 가능
- ※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, 외국교육기관, 국제학교의 경우 국내 학력 인정을 받는 학교에 한정

2. 교과 환산평균 계산 방법

- 교과 환산평균 계산 방법
 - 가. 교과목 석차 등급점수

석차등급	1	2	3	4	5	6	7	8	9
비율	4%	7%	12%	17%	20%	17%	12%	7%	4%
누적비율	4%	11%	23%	40%	60%	77%	89%	96%	100%
등급점수	100	94	85	71	53	34	20	11	5

나. 학기별 반영비율

	1학년 1학기	1학년 2학기	2학년 1학기
반영비율	0.2	0.3	0.5

$$1\text{학년 } 1\text{학기 환산평균} \times 0.2 + 1\text{학년 } 2\text{학기 환산평균} \times 0.3 + 2\text{학년 } 1\text{학기 환산평균} \times 0.5$$

다. 환산평균 계산법

$$\text{학기별 환산평균} = \frac{\sum \text{학기별 반영과목(이수단위} \times \text{등급점수)}}{\sum \text{학기별 반영과목 이수단위}}$$

※ 교과 환산평균 계산 관련 영재학교 재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는 해당사항 없음

3. 과학영재 선발 및 효력

- GIST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대학 지원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
- 본 제도에 의거, 과학영재로 선발되면 입학자격을 인정받아 GIST 학사과정 입학전형에 지원 가능. 또한 선발된 자가 GIST 학사과정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할 시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
- 과학영재 선정 및 GIST 학사과정 입학자격 인정은 당해연도만 가능

4. 필수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	제출방법
공통	신청서	공문 ²⁾
	교사추천서	
	교과 성적 입력자료	
	학교생활기록부 ¹⁾	

- 1) 학교생활기록부는 2학년 1학기까지의 최종성적 포함, 학교장 직인 및 원본대조필
- 2) 제출서류는 공문 용량(10MB) 이내로 첨부하되, 용량초과 시 공문을 나누어 발송
- 3) 제출 서식은 GIST 입학 홈페이지 참고

5. 신청절차

- 신청방법: 신청서, 교사추천서, 교과 성적 입력자료,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공문 제출
- 신청기간: 2025년 7월 28일(월) ~ 31일(목)
- 유의사항: 별도의 접수확인 절차(접수증 발부 또는 접수번호 통보 등)는 없음
- 공문수신처: 「광주과학기술원」 선택

6. 결과발표

- 발표일: 2025년 8월 22일(금)
- 발표방법: 공문(수신: 각 고등학교장)을 통해 통지하며, 별도의 인정서 발송 없음
 - ※ 자격인정자 중 2026학년도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소속 학교의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담당자를 통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절차를 필히 완료해야 함

7. 유의사항

-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 제출을 비롯한 별도의 보완절차가 일체 없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 및 서류제출에 주의가 필요
-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